

알기 쉬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3)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하도급 사건의 처리 절차 및 시정조치 내용

1. 처리 절차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는 신고 또는 직권 인지 → 사실 조사·확인 등 사건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결과 통지 → 이의신청 및 소제기의 과정으로 처리된다. 과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고 또는 직권 인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게 된다.

법 적용 대상이 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하도급 거래 분쟁 사건의 경우,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 신고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 확인·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분쟁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신고 사

실을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 절차는 중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도급법은 공법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고인 등 이해 당사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가 심의·의결 과정에 참고되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한편,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가 신고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고, 하도급 거래의 실태등을 정책적인 목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도 한다.

(2) 사실 조사·확인 등 사건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 또는 직권 인지의 내용이 법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 조사·확인 등 본격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즉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

사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게 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첫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각 처리한다.

둘째, 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거나 조사 도중 자발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였거나 시정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권고 처리한다.

셋째, 기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 조치 등을 하게 된다.

현재는 심사관이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권고 이하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위원회 심결을 받을 것인지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회 밑에 “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치유형을 심의 조정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을 한 원사업자에게 사망, 해산, 도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 조치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란 단순히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의미로서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결 재개는 가능하게 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결과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7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의결 절차는 당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심사 결과 보고와 피심인 또는 피심인

이 지정한 변호사 또는 인감을 지참한 피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등 대리인이 참석하여 진술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개최시 신고인 등도 참관을 허용하고, 위원회가 필요시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심의 과정을 공개하여 법 위반 사건의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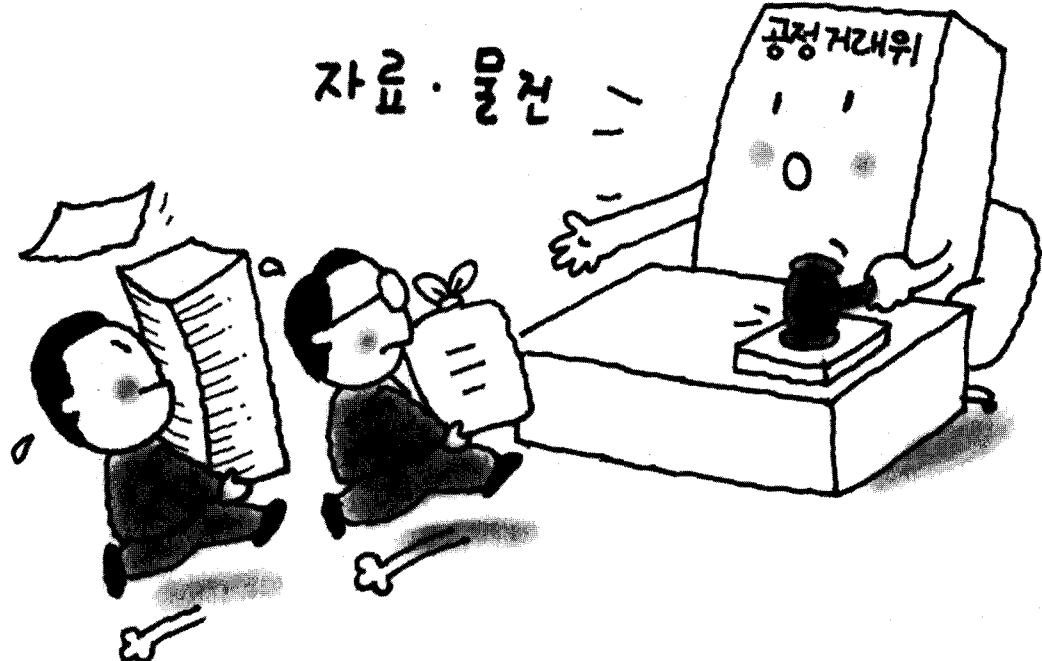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처분) 종류는 경고, 시정 명령, 형사 고발, 정부 발주의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이 있다. 이러한 의결 내용은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피심인과 신고자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4) 이의 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

피심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재신고 및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현재는 당초에 담당했던 심사관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신고 사건을 반드시 “심사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의신청 사건은 심사관을 교체하여 재심사하여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결 절차를 밟도록 한다.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하도급분쟁 사건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토록 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협회 등 8

개 협회에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건설업분쟁의 경우 원사업자의 도급 순위가 150위 미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억 미만, 엔지니어링 활동, 소프트웨어개발 및 건축설계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일단 협의회에 의뢰하여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현황 및 조정 분야〉

사업자 단체	조정 거래 분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 및 수리 위탁
2.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건설업자의 건설 및 제조 위탁
3.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의 위탁
4.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의 위탁
5.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개발의 위탁
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 설계의 위탁

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법 위반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협의회가 하도급분쟁사건의 조정 결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조정 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동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은 되었으나 서면 교부 등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위반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별도로 시행이 가능하다.

3. 시정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에 의거 당해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는 경고·시정 조치, 시정 명령 등이 있다. 경고는 법규정상 근거가 있는 시정조치는 아니나, 일종의 행정 지도로서 법 위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고 시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행해진다.

시정 권고는 첫째, 법 위반 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둘째,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시정하기

에는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거나 조치의 법정 시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셋째, 법 위반 행위자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 행해진다.

시정권고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며,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 시정명령을 위한 위원회의 절차가 개시된다.

시정명령은 당해 법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예컨대 대금의 지급 명령,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 법 위반 행위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기회가 주어지는 등 형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는 확정되며 강제 집행이 가능한 시정명령인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최종적 판단이 있기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해진 준사법적 행위로서 취소되기 까지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우선 이행을 하고 다투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채 다투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시정조치가 사법부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법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시정조치에 구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

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건설업법에 의해 영업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법 위반자를 벌금형에 처할 필요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공소를 제기

5.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및 의견 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거나, 조사를 기피·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벌금 내용	위반 행위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미교부, 거짓 서면 교부· 서류 미보존 또는 거짓 서류 작성·보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등의 구매 강제· 선금금의 지급 규정 위반· 부당한 수령 거부· 기성 및 준공 검사 규정 위반·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설계 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위반· 부당한 대물 변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경영 간섭· 보복 조치· 탈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발 조치시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고발하는 양벌 규정을 택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열거된 법 위반 금지 사항 내용과 벌금 내용은 표와 같다.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

귀를 짜는 장사꾼들

이용선/ 전주일보 주필

가격은 상품 가치를 일정한 돈으로 나 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과 돈과의 교환 비율인 셈인데, 그 가격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값이 떨어지고 물건은 들어오지 않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게 마련이다.

이래서 장날 시세는 그날 그날의 상품 수급 원리에 따라 이번 장날 가격이 다르고 저번 장날 가격이 달랐다. 또 천안 시장 가격 다르고, 대구 시장 가격이 달랐다.

그런데 상인들이 가격을 조작하는 농간과 술수를 부린 경우가 있었다. 가격 등락폭을 크게 만들어 그 차액만큼 돈을 많이 남기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장사술의 하나가 매점 행위다.

남산골 샌님이 책만 읽으면서 가난하게 살자, 그 가난에 신물이 난 아내가 “당신은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 평생 이 고생을 한다”고 바가지를 긁자 그 샌님은 우선 대금(大金)을 장사밀천으로 빌렸다. 그리고 그 엽전을 노새에 싣고 의정부 평강(平康)쪽으로 가서 전을 벌였다. 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원산(元山) 명태가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근세 화륜선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원산에서 잡힌 명태는 전부 육로를 통해 평강까지 와서 서울이나 평양에서 올라온 중매상들의 손에 넘어 갔었다.

그런데 남산골 샌님이 뭋을 지키며 명태가 들어오는 족족 모두 사버리니 다른 사람들은 경쟁을 할 수가 없었다. 다른 중개상들이 백냥 밑천으로 장사를 하려 왔다면 남산골 샌님은 만냥 엽전을 쌓아 놓고 명태 한 마리에 돈 석냥씩 더 주고 명태를 모두 사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명태를 독점해 버리자. 설날 그믐 대목을 만난 장꾼들은 안달이 났다. 중개상들도 장사할 물건이 없어 야단이 났다. 그때는 명태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품이 아니었다.

그때 풍속으로는 한겨울 국거리일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설 명절을 지내자면 명태값이 아무리 비싸도 안 사갈 수가 없는 필수품이었다. 남산골 샌님이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한다. 이것이 요즘으로 치면 “큰 돈 가져야 큰 돈 번다”는 원리와 똑같다.

상도의(商道義)가 확립되지 않고 장사하는 일 자체가 천시되던 때라 큰 돈이 작은 돈을 삼키는 것은 대어(大魚)가 중어식(中魚食)하고 중어는 소어식(小魚食)하는 생존원리였다.

장사도 경쟁이오, 생산자와 소비자도 어디 까지나 수요 공급으로 가격 경쟁을 했다. 그런데 큰 돈이 작은 돈을 눌러서 돈을 버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보다 더한 것은 속임수다. 저울눈으로



216.

눈속임하는 정도는 애교로나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아예 장사꾼끼리 귀를 짜고 해먹는 방법이었다.

“대구 약령시(藥令市)를 아오?”

“알다마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약초 시장이 서서 대궐에서 쓸 약초도 거기서 사갔지 않소?”

“맞소. 그 대구 약령시 노른자위가 약전 골목인데, 여기서 어떤 개성상인(開城商人) 약초전이 있었오.”

“어느 때 얘기요?”

“조선시대 말엽이오.”

대구 약령시가 서면 전국 각처에서 건재(乾材)나 한약방을 하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들었다. 남보다 더 질이 좋은 약재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약초를 팔려 나오는 농사꾼들도 구름떼를 이루며 약전골을 출입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지 않은가?

마침 지리산에서 나는 향기와 당귀가 많이

들어오는 장날인데, 약초집을 젊어진 사람들 이 모두 개성 약초집으로만 들어가고 있었다.

“왜 김 아무개 약초집으로만 향기 짐바리 가 계속 들어가오?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계속 그집 대문 안으로만 들어가오 그려.”

“아마 약초값을 후하게 쳐주는 모양이라 그런듯 하오.”

“그럼 내 약초도 그 집으로 가지고 가서 팔아야겠구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 아가는 걸 보면 그 집 약초값이 제일 좋은 탓일 것이오.”

사람이란 남이 하면 자기도 덩달아 따라가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지리산 당귀나 향기 짐이 모두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값도 제일 좋을 것이거니’ 하고 팔아 치웠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였다. 그 집 영감은 사 랑방에 앉아서 수십 명의 여리꾼(장사 홍정) 을 돋고 상품을 팔아주는 점원인데, 매매액

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로 구전을 먹는다)을 풀어 쇼를 한 것이다.

여리꾼들이 약초짐을 지고 그 집 앞 대문으로 들어가서 약초 파는 시늉을 했지만 이건 실제로 팔고 사는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바람잡는 것이다. 사기도박에서 바람잡이들이 손님처럼 가장하고 끌어오는 방법과 똑같다.

아침부터 수십명의 여리꾼들이 촌사람으로 가장하여 약초를 짊어지고 그 집 앞 대문으로 들어가서 파는 시늉을 하면 사고 팔린 약초는 뒷마당의 창고로 옮겨갔다.

그러면 그 창고 뒷문에서 여리꾼이 다시 그 약초짐을 짊어지고 나와 길을 빙돌아 또 약전골로 들어오면서 자리산쪽에서 오는 진짜 약초꾼들을 유인해서 그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이러니까 약초 열 짐만 가지면 하루종일 약전골목을 들락날락하게 하여 수백집 약초가 모두 그 집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게 하고, ‘한 장거리에 수백집 약초를 사들이는 대상(大商)’의 행세를 하는 방법이었다.

“그럼 약전골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는 그 일을 장날마다 보니까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니오?”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왜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김 아무개네 약초집에서 계속 그 짓을 하게 놓아 두오?”

“엎어치나 메어치나 한가지란 말을 모르오?”

“그게 무슨 뜻이오?”

“그 약초집들도 한통속이니까 그렇지요. 김 아무개 약초집에서 그런 방법으로 당귀나 향기값을 후리쳐서 사두면 나중에 그들끼리 그 약초를 싸게 나누어가지니까 한통속이 아니겠오? 공연히 맞서 경쟁을 할 필요도 없죠.”

“장사꾼들끼리 그런 방법을 썼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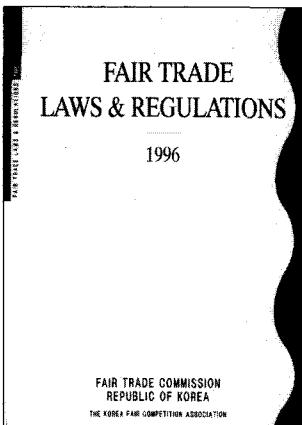
공정경쟁이나 경매같은 방법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장사꾼은 따로 점포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가재는 게편처럼 서로 가까왔다. 가격도 담합했다.

가령 누가 회귀하고 좋은 산삼 하나를 가지고 A점포로 팔려 갔다고 치자. 천냥짜리는 되는데 삼백냥 밖에 안본다. 그러면 산삼주인은 안 팔고 그 상품을 가지고 B점포로 가면 B점포에서는 A보다 더 적게 이백오십냥에 팔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C점포에 갔지만 여기서는 “이 백냥 받고 팔테면 팔고, 안 팔테면 가지고 가슈” 하고 배짱을 내미니 어쩌는가.

그래도 처음 갔던 A점포 주인이 후한 값을 쳐주었다 하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천냥짜리를 삼백냥에 팔고 간다.

그때 장사꾼들은 서로 눈짓으로 “누가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오면 얼마 이상은 값을 부르지 말고 후려치라”고 귀를 짜 값을 깎고 A, B, C 세 점포 주인은 나중에 저희끼리 이익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서 장사를 했던 것이다. 일종의 담합(談合)이다. ■



영문판 공정거래 법령집 Fair Trade Laws & Regulations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경쟁정책 분야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선·후진국 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쟁법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중인 모든 법률 및 시행령과 주요 고시를 망라한 영문판 공정거래법을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관련 부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고시 등 14개 고시가 수록되어 있다. 하도급 관련 부분에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어음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가, 약관법 관련 부분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수록되어 있다.

별도 구입에 관한 문의는 전화 775-8870, 팩스 775-8873. 값은 12,000원이다.

한국공정경쟁협회

4월 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5월을 잔인한 달로 기억하고 있다. 5월의 온화한 햇살 아래에서 광주의 그네들은 꽃잎처럼 뚝뚝 떨어졌다고 한다. 코딱지만한 땅덩이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도 당시 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말해 줘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나이였다.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기에.....

전관식

롯데제과(주) 기획실

“

요즘은 마음 밑바닥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절대적 폭력 앞에 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향락을 우선하는 지금의 X세대에 의해 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씁쓸한 생각이 든다.

”

1988년

그때는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이 교차하던 때였다. 올림픽이라는 민족적 경사의 이면에는 노동 착취, 최류탄, 돌, 데모, 파업...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때, 멋모르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꿈꾸며, 그에 한껏 취해보리라 맘 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발을 들여 놓아보니 나의 꿈과 현실엔 많은 괴리가 있었다. 모든 사물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듯이, 올림픽으로 밝게 보이는 우리 사회에도 막상 뒤를 살짝 들여다보면 저만큼 길다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생활에 짜든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나가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문을 잠그고 나갔더니 불이 나서 어린 남매가 숨을 거뒀다는 얘기, 달동네 주민들이 불한당들에게 쫓겨나서 갈 곳도 없다는 얘기 등등.

선배를 붙잡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현실의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는 도중에는 어김없이 소위 금지곡이라 는 노래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와 주점 가득 울려퍼져 그 속에서 울분을 삭이며 끝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곤 했다. 젊은 혈기에 때로는 과격한 몸부림이 있어 질책의 소리도 있었지만, 누구나 마음으로는 이해를 해주었다.

그 와중에서도 금지곡이라는 굴레를 벗은 노래가 있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었다. 거리를 걸어가다 민중이니, 노동자니, 착취니, 억압이니 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 모두 붉은 색을 뒤집어 쓰고 닭장차를 탄 때도 ‘아침 이슬’은 불러도 괜찮았다. 그래서 마치 약을 올리듯 경찰들 앞에서는 일부러 ‘아침 이슬’을 크게 부르곤 했다. 입을 빼죽거리는 그네들을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긴밤, 풀잎, 이슬, 무덤, 해, 시련, 서러움……. 암울한 시대의 은유들이다. 절망과 희망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교차하며 어우러지기에 더욱 가슴에 다가온다. 지금도 나는 그 노랫말이 뭘 뜻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다만 막연한 느낌으로만 그 노래를 이해하고 좋아할 뿐이다.

요즘은 마음 밑바닥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

이 절대적 폭력 앞에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향락을 우선하는 지금의 X세대에 의해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씁쓸한 생각이 듦다.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알지 못한 채 마냥 밝은 그네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야속한 느낌마저 듦다.

5월의 그날 이후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훨씬 지난 지금, 그 시절의 최고 권력자들이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 있다.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그네들은 파닥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시에는 상상이나 했겠는가?

세상살이를 얼마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빨리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듦다. 세상이 저 밝은 곳으로 가고 있음의 조그만 징표로 여겨진다.

그래도 죄지은 그네들은, ‘아침 이슬’이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친구들과 어울려 한 잔씩 기울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우리는 지난 날과 같이 ‘아침 이슬’을 부른다. 나만의 18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18번이기 때문에 모두의 어깨와 어깨를 결고서, 엄숙하게 부른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맷힌……” ■